

문서번호 : 채널연금컨설팅1센터 제 2023-00043

일자 : 2023-04-24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참조 : 집합투자상품 관련 부서

제목 : 소규모펀드 해지 예정 통보

1. 귀사(행)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에 의거한 펀드의 해지가능 사유에 해당하는 다음의 투자신탁을 해지하려고 합니다.

- 다음 -

1. 해지 대상 펀드: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모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한화연금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한화월지급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2. 설정 및 환매청구 가능 시한: 2023. 06. 16. Late
3. 해지 사유: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펀드의 임의 해지 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)
4. 해지일 및 상환금 지급일: 2023. 06. 29.
5. 지급 방법: 투자신탁의 해지일에 판매회사 계좌로 입금 처리

수신처(가나다순): KB증권, NH농협은행, SC은행, 교보생명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신한투자증권, 우리은행, 키움증권, 하나은행, 한국씨티은행, 한국투자증권, 한국포스증권, 현대차증권 (총 14개)

[붙임] 소규모펀드 해지 안내문 1부. 끝.

